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77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이학영·조오섭·박상혁

이규민・김병욱・윤재갑

정필모 · 김경만 · 박홍근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상 징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수호·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현역병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 2. 현역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
	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
	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이라 한다)은 국가의
	<u>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u>
	<u>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u>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
	에 따른 현역병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현역병이 제4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
	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